

[공모펀드 변경안내]

가. 펀드명 : 유진 챔피언공모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나. 변경시행일 : 2019년 7월 26일(금) (*예정)

다.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라. 변경 내용 :

- 1) 환매수수료 삭제 (Class A., C, E, I-1, W, I-2, S)
- 2) Class A2 신설
- 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신 설〉	Class A2 (CU307)
요약정보		
환매수수료	Class A., C, E, W, S의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없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 설〉	Class A2 (CU30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 설〉	Class A2 (CU30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 설〉	1) 환매수수료 삭제(Class A., C, E, I-1, W, I-2, S) 2) Class A2 수익증권 신설 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 설〉	Class A2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 설〉	Class A2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 선취판매수수료	〈신 설〉	Class A2 : 납입금액의 0.80% 이내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Class A., C, E, I-1, W, I-2, S의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없음

나. 환매 (4) 환매수수료	<u>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Class A, C, E, I-1, W, I-2, S의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 <u><신 설></u>	없음 Class A2 - 가입자격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80% 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전환수수료 :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신 설></u>	Class A2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50% - 판매회사보수 : 연 0.50% - 신탁업자보수 : 연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2% - 총보수 : 연 1.05%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u>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

	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환매수수료	<u>Class A., C, E, W, S의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	<u>없음</u>

[집합투자계약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현행과 같음) <u>12. Class A2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u>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생략) 1. ~ 11. (생략) <u><신설></u>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u>12. Class A2 수익증권</u>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판매기준 및 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매가격)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u>12. Class A2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u>
제39조(보수)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11. (생략) <u>〈신설〉</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u>12. Class A2 수익증권</u> <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u>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u>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u> <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u>
제40조(판매수수료)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u>〈신설〉</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2. Class A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80 이내</u>
제41조(환매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종류 수익증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환매 수수료를 징구한다. <u>1. Class A</u> <u>2. Class C</u> <u>3. Class E</u> <u>4. Class I-1</u> <u>5. Class W</u> <u>6. Class I-2</u> <u>7. Class S</u> <u>8. Class C-P2</u> <u>②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 <u>③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 <u>1. 30일미만: 이익금의 70%</u>	<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p>2.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p> <p><u>④판매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p>① (생략)</p> <p>1. ~ 4. (생략)</p> <p>5.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이하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u>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p>① (생략)</p> <p>1. ~ 2. (생략)</p> <p><u>신설</u></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u></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 ⑥ (생략)</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이하 생략)</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